

## 2021년 가평파크골프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근무할 참신하고 의욕적인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2. 15.

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

### 1. 채용내용 및 인원

근무장소	고용 형태	담당업무	채용 인원	근로기간	급여 및 근로조건
가평 파크골프장	기간제 근로	파크골프장 시설, 환경정비, 잔디 및 수목 관리등	2명	2021-04-01 ~ 2021-11-30	◆ 급여조건: 74,960원/일 ◆ 근로조건: 주5일(40시간) 근무

※ 세부 근무시간은 가평파크골프장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### 2. 응시자격

#### 가. 공통기준

구 분	내 용
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 시행내규 제11조(기간제 근로자의 자격)	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. 경력, 학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된 사람 7. 병역 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

## 나. 연령 및 지역기준

내 용
1. 만18세 이상 만60세 이하
2. 공고일 1일 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가평군내로 되어있는 자

다. 우대사항: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(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 내규 제5조 제2항 관련) ※ 첨부자료 참조

## 3. 원서접수

가. 접수기간: 2021-02-15 ~ 2021-02-24

나. 접수방법: 현장방문, 우편, 온라인 접수

- 현장방문, 우편접수: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산장길 74 (산장관광지 관리소)
- 온라인접수: hantender@naver.com

※ 접수마감일(2020-02-24 18:00)까지 접수된 응시자에 한함

다. 제출서류

제출서류 항목
1.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각1부 (첨부 서식에 작성)
2. 개인정보보호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(첨부 서식에 작성)
3. 주민등록등본 1부 ※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
4. 우대사항 증명서 각 1부 (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일에 제출) ※ 해당자에 한함

## 4. 채용일정 및 전형방법

구 분	일 시	접수방법 등	합격자 발표
원서접수	2021-02-15 ~ 2021-02-24 18:00	현장방문, 우편, 이메일	
서류심사	02-26	-	02-26
면접심사	03-03	한석봉체육관 지하 1층 회의실	03-05

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사전고지 후 변동될 수 있음

가. 서류심사

- 기준일자: 2021-02-24 18:00 (원서접수 마감일 기준)
- 심사일자: 2021-02-26
- 심사항목: 응시 자격 기준(거주지, 연령) 부합여부 심사(적격 여부)

나. 면접심사

- 면접일자: 2021-03-03
- 면접장소: 한석봉체육관 지하 1층 회의실
- ※ 면접장소는 진행상황에 따라 사전고지 후 변경될 수 있음
- 심사대상: 서류심사 적격자
- 심사기준

평가항목	평가점수	기준				
		5 매우우수	4 우수	3 보통	2 미흡	1 매우미흡
합계	30					
고객지향 및 공익추구 자세	5					
창의성	5					
예의·품행 및 성실성	5					
문제파악 및 해결능력	5					
대인관계	5					
직무 전문성	5					

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보통(18점)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(2점) 이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.

5. 기타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,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.(채용 여부가 확정 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청구 기간 입니다.)
- 나. 접수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
- 다.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·추가보완 등이 불가 합니다.
- 라.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·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마. 본채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일전까지 변경 사항을 채용공고 사이트에 공고합니다.
- 바.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.
- 사.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아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경영팀(031-8078-805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첨부]

## 직원채용 시험가산점수

구 분	세 분	가산점수 및 부가점수	비 고
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 및 보호 대상자	각 개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가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으로 구분 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산</li> <li>•1인이 1개 이상의 가산대상에 해당될 경우 가산점이 높은 1개만 적용함.</li> <li>•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</li> <li>•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</li> <li>•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</li> </ul>
	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	전형별 만점의 5%	
	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	전형별 만점의 5%	
	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	전형별 만점의 3%	
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	전형별 만점의 3%	
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	전형별 만점의 3%	
사회적 약자 및 취업취약계층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	전형별 만점의 3%	
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	전형별 만점의 3%	

※ 가산점수는 면접심사점수(100점)에 가산됨